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2월 2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26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2. 24.(금)	담당부서	지역경제진흥과
담당과장	김재은 과장(044-203-4420)	담 당 자	김아름 사무관(044-203-4426)

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더욱 낮아져

◈ **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: 업력 1년되는 기업이면 보조금 신청 가능**
◈ **기업 부담 경감 : 담보 부담 완화, 투자기간 연장 등**
◈ **21년 보조금 운영 실적 : 향후 3년간 지방 內 민간투자 총 1조7천억원, 신규 일자리 총 3,400개 창출**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**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**(산업부 고시: 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”) **일부개정안을 ‘22년 1월 1일부터 시행**할 예정임

○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**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**하기 위해 **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**하는 제도이며,

○ 상생형일자리기업 지원(‘20.11), 고용인원 재배치 요건 완화(‘21.1) 등 정책 수요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음

□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의 지역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 **보조금 신청요건은 완화하고,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는** 방향으로 이루어짐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①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통한 수혜기업 확대

○ **(업 력)** 그간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였으나, 향후 업력 1년 이상 기업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

○ **(부채 비율)** 그간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%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,

-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 (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)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% 미만이면 보조금 신청 가능

○ **(창업보육공간 입주기업의 신규 투자)**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신·증설 투자시 보조금 수혜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가 있으나,

-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해지로 동일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지원 가능

* 창업보육공간 :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내 창업보육공간,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,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창업보육공간

② 보조금 수혜기업의 부담 경감

○ **(투자기간 연장)**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·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

* 보조금 신청기업은 3년의 투자기간 내 계획한 투자 및 고용을 이행하여야 하나,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투자기간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

○ **(담보제출 부담 완화)** 보조금 수혜기업은 고용·투자 목표 미달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,

-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*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확보한 담보 (이행보증증권, 근저당 등)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

*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

○ **(기존사업장 유지 의무 예외)**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하였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운영할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함

□ 한편,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'21년 69개 지방투자 기업에게 국비 총 1,923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

○ 이를 통해 **향후 3년간 지방에 1조7,2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, 3,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* 보조금 신청기업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투자액과 신규고용인원 합산

○ 또한, ① 상생형 지역일자리 본격 확산 ② 산업위기지역의 조속한 회복 ③ 지역별 특성화된 생태계 구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< '21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실적 >

	투자 기업 (개)	투자액 (억원)	신규일자리 (명)
상생형일자리기업	2	2,710	451
산업위기지역	9	1,408	450
지역특성화업종 우대	28	7,916	1661

【붙 임】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김아름 사무관(☎ 044-203-44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개요**

□ **(목적)**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

○ 균특법 제정과 함께 '04년부터 지방이전기업에 보조금 지원 시작

* (지원근거)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, 시행령 제17조

○ 신·증설투자('11년), 국내복귀('12년), 개성공단기업('14년),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('20년)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

* (관련 규정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(산업부 고시)

□ **(지원내용)** 기업의 입지·설비 투자에 대해 지역별·기업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보조금(국비+지방비 매칭)으로 지원

<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 비율 >

지원비율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매칭비율 (국비:지방비)
균형발전 상위지역	- (설비) 3%	- (설비) 5%	(입지) 9% (설비) 7%	45 : 55
균형발전 중위지역	- (설비) 5%	(입지) 10% (설비) 7%	(입지) 30% (설비) 9%	65 : 35
균형발전 하위지역	- (설비) 8%	(입지) 20% (설비) 11%	(입지) 40% (설비) 14%	75 : 25
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	- (설비) 11%	(입지) 25% (설비) 19%	(입지) 50% (설비) 24%	75 : 25

□ **(지원절차)** 지자체가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, 산업부는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결정

<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진행 절차 >

